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975호
2024. 9. 27.

- | 2023년 ENR 250대 건설기업 매출 동향 분석
- | 싱가포르 건설산업 혁신 정책의 성과와 시사점
- |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4.9)
- | 연구원 소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23년 ENR 250대 건설기업 매출 동향 분석

- 해외 매출 규모, 전년 대비 16.6% 증가한 4,997억 달러 기록 -

250대 건설기업의 2023년 해외 매출 규모, 2015년 이후 최고치 기록

- 2022년 4,285억 달러였던 ENR 250대 건설기업의 해외 매출이 2023년에 5천억 달러에 근접하며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함.
 - 250대 기업의 글로벌(해외+국내) 매출 규모는 2조 2,49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으며, 국내 매출 규모는 1조 7,4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함.
 - 해외 매출이 글로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2%로 전년 대비 2.3%p 증가하며, 2020년 이후 처음으로 20%대 비중을 회복함.
 - ENR에 따르면 250대 기업의 2023년 신규 수주 프로젝트 계약 금액은 약 15.1% 증가했으며, 2023년과 2024년 순위에 포함되었던 237개 기업 중 63%가 2023년에 해외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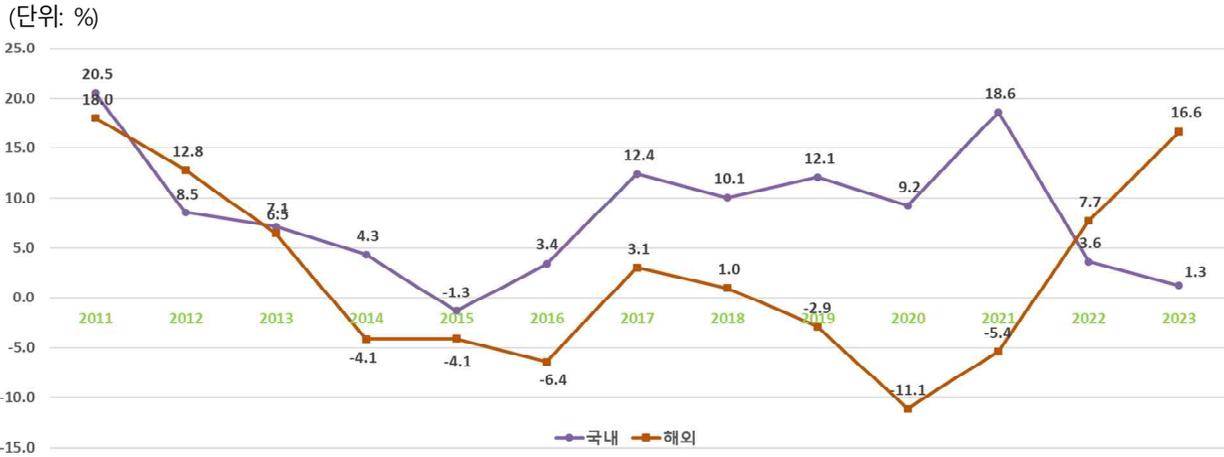
<그림 1> ENR 250대 건설기업의 글로벌(국내+해외) 매출 및 해외 매출 비중 추이



- 2023년의 해외 매출성장률 16.6%는 2021년(18.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ENR 250대 기업의 2019~2021년 동안 연평균 -6.5%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성장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됨.

- 250대 기업의 국내 매출성장률은 1.3%로 2016년부터 8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1.3%를 기록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그림 2> ENR 250대 건설기업의 국내와 해외 매출성장률 추이



■ 전체 해외 매출 중 공종별로는 교통, 건축, 석유화학 부문이 66.6%(3,326억 달러), 지역별로는 유럽, 아시아, 북미 지역이 65%(3,225억 달러) 차지

- 석유화학 부문은 2022년(569억 달러) 대비 42.4%가 늘어난 811억 달러, 전체 해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2%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제조 및 산업 분야도 전년 대비 40%가 증가한 520억 달러를 기록하며 ENR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체 해외 매출에서 두 자릿수 비중(11.1%)을 차지함.
- 반면에, 2022년 1,426억 달러로 전체 해외 매출의 33.3%를 차지했던 교통 부문은 1,545억 달러로 8.3% 증가했으나 전체 해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9%로 2.4%p 감소함.

<그림 3> 공종별 해외 매출 비중 추이



- 지역별로 보면, 2022년 1,128억 달러를 기록했던 유럽 지역의 해외 매출은 1,308억 달러로 16% 증가하며 전체 매출의 26%를 차지함.
 - 2022년 1,092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9년 이후 3년 만에 1천억 달러 대를 회복했던 아시아 시장은 10.1%가 증가하며 전체 해외 매출에서 24%의 비중으로 유럽에 이은 2위를 기록함.
 - 2022년 499억 달러로 6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던 중동 시장은 28.8% 늘어난 642.7억 달러로 전체 해외 매출에서 13%의 비중을 차지함.
 - 미국과 캐나다 시장은 각각 715억 달러와 241억 달러로 두 지역의 매출을 합친 규모는 전체 해외 매출의 19% 수준임.

<그림 4> 지역별 해외 매출 비중 추이



- 국가별 점유율 순위는 중국(24.6%), 프랑스(17%), 스페인(11.9%), 미국(6.9%), 한국(6.8%), 이탈리아(6.3%), 튀르키예(3.7%), 일본(3.6%) 순임.
 - 우리나라는 11개 기업이 순위에 포함되며 총 341.7억 달러의 해외 매출로 점유율 5위를 기록함. 매출 규모로는 전년 대비 29.7% 증가했으며 점유율로는 0.7%p 상승함.
 - 프랑스 Vinci를 포함해 상위 10개 기업의 해외 매출을 합친 규모는 2,172억 달러로 250대 기업의 전체 해외 매출 중 43.5%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1위	12위
1-12위 기업	VINCI	ACS	BOUYGUES	CCCCG	STRABAG	CSCEC	SKANSKA	PCCC	SAIPEM	CRCC	FERROVIAL	HYUNDAI E&C
우리나라 기업 순위	HYUNDAI E&C(12위)	삼성물산(16위)	현대ENG(25위)	삼성E&A(27위)	GS건설(49위)	대우건설(50위)	포스코E&C(68위)	롯데건설(79위)	DL E&C(86위)	쌍용건설(161위)	한화건설(247위)	-

손태홍(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 · thsohn@cerik.re.kr)

싱가포르 건설산업 혁신 정책의 성과와 시사점

- 제조업화·자동화로 원가 절감과 다단계 하도급 해소 -

■ 혁신 정책 개요

- 싱가포르가 추진한 건설산업 혁신 정책은 두 단계로 구분됨. 1단계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건설산업 전환 지도(The Construction Industry Transformation Map)’를 기반으로 추진된 혁신 정책이고, 2단계는 2022년 9월에 시작된 ‘도시개발 산업군 전환지도¹⁾(Built Environment Industry Transformation Map)’ 기반의 혁신 정책임.
- 1단계 건설산업 전환지도 기반 혁신 정책은 프로젝트 수행방식의 혁신을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를 주요 목표로 함. 추진 방식의 요체는 건설산업의 제조업화임.
 - 1단계 혁신 정책의 키워드는 ‘사전제작 및 조립(Design for Manufacturing and Assembly, 이하 DfMA)’, ‘통합 디지털 체계(Integrated Digital Delivery, 이하 IDD임)’로 프로젝트 수행방식을 현장 중심에서 사전제작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이를 위해 계획, 설계, 구매, 시공, 유지관리 등 생애주기 전반의 디지털화를 도모하는 것임.
 - 나아가 DfMA를 촉진하기 위해 ‘독립적인 구조물의 적층 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The Prefabricated Prefinished Volumetric Construction, 이하 PPVC)’를 만들어 적용하고, 인력양성과 기금 지원을 확대함.
- 2단계 도시개발 산업군 전환지도²⁾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건설산업(2017년 시작)과 자산관리가 포함된 부동산업(2018년 시작)의 통합임. 1단계 건설산업 전환 지도의 성과를 확산시켜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함.
 - 2차 도시개발 산업군 전환지도의 핵심 영역은 ‘통합 계획설계(Integrated Planning and Design, 이하 IPD)’, ‘선진 제작 및 조립(Advanced Manufacturing and Assembly, 이하 AMA)’, ‘지속 가능한 도시 시스템(Sustainable Urban System, 이하 SUS)’임. 모두 1단계에서 달성한 목표를

1) Built Environment Industry에 대해 합의된 번역어는 없는 것으로 보임. 개념적으로 Built Environment는 Natural Environment(자연환경)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모든 환경, 즉 인위적 조성환경을 의미함. 따라서 Built Environment를 인위적 조성환경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수 있으나 인위적 조성환경은 결국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 공간을 의미함. 싱가포르의 Built Environment Industry도, 지하부터 공중까지 각종 건축물, 부동산, 조경, 사회기반시설, 안전 등 도시 공간의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다양한 산업군을 포함하고 있음. 이해의 편의를 위해 도시개발 산업군으로 번역함.

2) 1, 2단계 혁신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과 비교는 이광표, “스마트네이션, 싱가포르의 건설산업 혁신 정책 방향”, 건설동향브리핑 제 924호(2023. 9. 1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상향 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IPD는 1단계 IDD의 확장판으로 신규로 건설되는 건물 바닥 연면적의 34% 수준인 디지털 설계·구매를 2025년까지 70%로 높이고, AMA도 1단계 DfMA로 달성한 44%의 제조화 건설 수준을 2025년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SUS도 현재 51% 미만인 그린빌딩을 2030년까지 8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성과로 이어진 싱가포르의 혁신 정책

- 다른 주요 건설 선진국과 달리 싱가포르의 건설산업 혁신 정책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건설 생산성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2022년 싱가포르 공공분야의 경우 2010년 대비 비주거용 건물은 30%, 주거용 건물은 35%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루었음.³⁾
 - 시공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분야도 20% 인력감축이 가능한 상황에 도달하고 있음. 2023년 기준 건물 외벽 검사의 75%를 드론이 담당하고 있고, 검사 드론도 건물의 결함을 스스로 찾아내는 인공지능을 보유한 드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이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임.⁴⁾
 - 제조 중심 생산방식 확산과 함께 혁신적인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한 인력양성도 순조롭게 진행 중임. 나아가 분쟁 감소와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협력적 계약방식의 확대 노력도 시범사업을 통해 방법과 절차를 만들고 확산을 시도하고 있음.
- 싱가포르 혁신 정책의 성과는 영국의 혁신 정책인 『Construction 2025』에 담긴 사업 전 주기 비용 33% 절감, 탄소가스 50% 저감, 공사 기간 50% 단축, 건설 분야 수출입 격차 50% 감소 등의 목표가 달성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⁵⁾된 것과 대비됨.
- 싱가포르 건설산업 혁신 정책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게 된 것은 추진 전략과 방식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고는 시사점을 통해 성공 요인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함.

3) "BUILT ENVIRONMENT INDUSTRY TRANSFORMATION MAP TO FACILITATE INTEGRATION AND COLLABORATIVE BREAKTHROUGH ACROSS ENTIRE VALUE CHAIN", BCA. 6 September 2022.

4) Connecting the Dots(annual Report 2022/2023)". BCA(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5) 파머보고서(THE FARMER REVIEW OF THE UK CONSTRUCTION LABOUR MODEL)가 대표적임. "The CLC's Construction 2025 Report, which sets out government's and industry's joint ambitions with targets for lower-costs, increased speed, carbon reduction and more exports, look impossible to achieve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review" 보고서 20쪽 하단.

■ 성공요인1 : 실행력을 갖춘 추진 주체

- 싱가포르 건설산업 혁신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한 것은 느슨한 연합주의 전략을 배제하고, “현 상태”에서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구현가능한 주체가 혁신 정책을 주도하였다는 점임.
 - 건설산업 혁신이나 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산·학·연” 또는 “참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그러나 설계와 시공, 일반업체와 전문업체, 시설관리업 등 참여자가 이해관계가 수시로 충돌하는 경우,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 활동은 추진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 특히 집행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는 “다 함께 어깨 걸고 잘해보자”라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가 태생적으로 어려움. 강한 추진력으로 혁신 정책의 성과 도출은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집행력을 보유할 때 가능할 것임.
 - 집행력 없는 협의체의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건설리더십위원회(Construction Leadership Council, 이하 CLC)’⁶⁾임. 2016년, CLC의 요청으로 영국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조사한 컨설팅 기업의 CEO였던 파머(Farmer)는 영국의 건설산업 혁신 운동을 주도한 CLC가 다양하고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파편화된 리더십(Leadership Fragmentation)을 갖고 있어 혁신 운동이 성과를 얻기 어려운 구조임을 지적한 바 있음.
- 싱가포르는 정책수립 단계에서 사업자 단체와 기구, 고등교육기관, 노조와 정부 기구 등 다양한 주체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한 후, 정책집행 단계에서 구현가능한 주체와 방법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였음.
 - 건설산업 분야의 경우 ‘싱가포르 건설청(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이하 BCA)’은 1단계 혁신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자신이 발주하는 공사 또는 BCA가 민간에게 분양하는 토지에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 혁신 정책의 목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는 BCA의 책임과 권한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임. BCA가 주도한 1단계 혁신 정책으로 생산성, 품질, 안전, 그린빌딩 확산 등의 성과가 도출되었고, 이를 토대로 도시개발 및 자산관리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시개발 산업군 전환지도가 이 추진되었음

■ 성공요인2 : 생산방식의 혁신, 제조업화

- 싱가포르 건설산업 혁신은 “건설산업의 제조업화”라는 추진 방식을 통해 이루어짐. 1단계 혁신 정책의 키워드인 사전제작 및 조립은 제조업화를 통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통합 설

6) 영국 CLC(Construction Leadership Council)는 영국 최대 건설 관련 단체 연합으로 우리나라 건단련(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과 비슷한 유형이나 설계, 견적, 자산관리 업종은 물론 공공기관과 전문가 단체까지 포함되어 있어 건단련보다 훨씬 광범위함.

계 확대, 현장 외국인력 최소화와 안전 확보 등의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냄.

- PPVC는 DfMA를 구현하기 위한 첫 안내서로, PPVC는 건축물 내부를 구성하는 유닛을 레고 블록 처럼 사전 제작해 조립하는 방식임. PPVC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비용과 공사 기간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싱가포르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은 일부 사전제작(PC, Precast Concrete) 방식을 일정 비율 반영하거나 화장실 등 건물의 일부 유닛을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시공하도록 하고 있음. PPVC는 벽과 지붕 및 바닥이 독립된 구조로 사전제작되어 현장에서 설치만 하면 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모듈러 방식임.
- 나아가 높은 수준의 제조업화는 공장제작 과정에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자동화를 확산시키고, 독립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 통합 설계 확대 및 많은 나라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다단계 하도급을 사라지게 하였음.
- 싱가포르의 건설산업 혁신 정책은 낮은 생산성, 다단계 하도급과 낮은 이윤, 취약한 금융,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열악한 산업 이미지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이종한(부장 · ljh@cerik.re.kr)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4.9)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yjjun@cerik.re.kr)

- ◎ 지난 약 1개월(8.27.~9.20.)간 입법부에서는 총 915건의 법안이 발의됨. 이 중 건설산업 관련 주요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달에 이어 폭염 등 기상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 규제 강화와 전기차 화재 관련 입법이 계속됨.
 - 그 외 작년부터 산업 내 여러 논의가 이루어진 건설기계 관련 불법 행위 개선 관련 법률안과 계속되는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복수 법률안 등도 주목해야 할 법안임.

이슈 1: 건설기계 부당금품 근절... 입법을 통해 실현되나?

- ◎ 지난해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 후속 조치로 단속처벌 및 감리 의무 강화를 통한 불법하도급 근절, 임금체불 방지 및 근로계약 투명화, 건설노조 후속 대책을 위해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발표(23.5.)하였으나,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됨.
- ◎ 이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약 4개월이 지난 현재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의 재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음.
- ◎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부당금품 요구하거나 주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운송거부 제재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08호, 엄태영의원 대표 발의)이 입법 발의됨.
 - 입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월레비와 같이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함(안 제27조의제3항).
 -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소(안 제35조의2제1항 제7호)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40조 4호의2).
 - 입법안은 또한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나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처분근거를 마련함.
 - 구체적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장 또는 그 진입로에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오랜 시간 세워두어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와 함께, △부당한 가동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 건설기계 임대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5조의3제1항 제3호 및 제4호). 더불어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44조의제1항 제5호)하고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 정지할 수 있도록 제시함(안 제35조의2 제7호).
- ◎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양당(민주당·국민의 힘) 공약 모두 '건설기계 부당금품 근절 관련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손쉽게 입법될 것으로 보임.

이슈 2: 계속되는 하도급거래 규제 강화 입법 동향

- ◎ 22대 국회에서도 하도급거래 공정화 강화 기치 아래 하도급 규제 강화 입법이 잇따르고 있음.
- ◎ 먼저 「하도급법」 일부개정에 대해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법안(의안번호 제3535호) 및 이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법안(의안번호 제3798호) 모두 부당성이 입증된 건설하도급계약의 부당특약 무효화를 담은 입법안을 제안함.
- ◎ 또한, 이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915호, 제2927호 등)과 같이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에서도 주요 원자재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 및 운반비 또한 연동제 대상으로 규율하자는 안을 제안함(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798호).
- ◎ 이뿐만이 아니라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4032호)의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의 이유로 하도급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여하던 기존 3배 이내의 범위 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실효성 저하를 문제 삼아 손해 인정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이를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는 강력한 처벌안을 제안함.
- ◎ 이러한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하도급 규제 강화는 꼭 필요한 경우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입법안이 실질적 효과를 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고민이 입법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일례로 불법행위의 예방 기능 차원에서 도입이 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상향이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소송남발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함.
 - 이뿐만이 아니라 부당특약 무효의 경우 이미 해당 규정이 도입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이 해당 법률 마련만으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자유의 원칙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상존함.

이슈 3: 혼탁한 부동산 PF 개선의 첫걸음 기대...

- ◎ 최근 KDI 연구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경우 영미 국가와 달리 낮은 자기자본비율과 시공자의 책임준공 등 제3자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로 부실 대출 및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한 우리 경제의 부실 뇌관이라 할 수 있음.
- ◎ 최근 입법부 또한 이를 인식 부동산 PF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법률안을 제시함.
 - 권영진·손명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안번호 제3919호)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 정보조차 취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 개선을 위한 기본적 관리체계(정보취합 및 체계 구축 방안 및 조정위원회 운영 등) 구축을 중심으로 입법안을 제안함.
- ◎ 해당 법률만으로 부동산 PF 시장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겠지만 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해당 입법안이 활용되기를 희망함.

■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4.8.27.~'24.9.20)

법률명	주요 내용
「건설기계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308호(엄태영 의원 등 10인)] ('24.8.2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건설기계를 이용해 건설 현장 내 일자리와 부당금품을 요구하고 미수용 시 태업, 작업방해와 점거, 일방적·집단적 운송 거부 등 불공정 관행이 만연하여 건설 현장의 성실 시공 곤란과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에 애로사항이 많아 개선 필요 - (제안방향)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일방적·집단적 운송 거부, 건설 현장의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하여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하는 등의 불법·부당행위 제지하여 불공정 관행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 (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7호의2, 제35조의2제1항제7호, 제40조 제4호의2, 제44조제1항제5호 신설 등)
「산업안전 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357호(이수진 의원 등 10인)] ('24.8.2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 정부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는 전국 수많은 사업장의 관리·감독의 한계 발생이 불가피하기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 중이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의무 사항이 아니며,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치도 없는 상황이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 보장(안제23조, 제172조 및 제175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382호(이수진 의원 등 10인)] ('24.8.2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 완화 규정을 운영하여 해당 인력의 채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 내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기에 개선 필요. 특히 산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 장년의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어 예방 차원 보건관리 필요 - (제안방향)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업의 규제 완화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9조제4항제3호 삭제)
「건설 근로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408호(김위상 의원 등 11인)] ('24.8.3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준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는 근로자 수와 건설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외 화장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여 신축 아파트 인분 봉지 등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 (안 제7조의2 등)
「소규모 주택 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494호(이현승 의원 등 13인)] ('24.9.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속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해 조합·토지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되, 그 요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긴급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시의 경우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공공시행자의 사업 시행 요건으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추가 규정(안 제18조제1항제1호)

법률명	주요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495호(이현승 의원 등 13인)] ('24.9.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03494호(이현승 의원 등 13인 발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동일 - (제안방향) 공공시행자의 사업 시행 요건으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추가 규정(안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514호(김은혜 의원 등 12인)] ('24.9.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 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이외 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계획의 일률적인 기준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 속도 제고가 어려우며, 사업 여건에 맞는 유연한 계획 수립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에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는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유연한 사업추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 산정 대상 간소화(안 제9조) 나.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유연하게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다.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여건과 주민 선호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3조) 라.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요건 합리화(안 제35조) 마. 사업시행인가 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는 대상과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안 제50조의2 및 제57조) 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에 관한 사항 통지 하도록 규정(안 제72조) 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하기 이전에도 직접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8조)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516호(김은혜 의원 등 12인)] ('24.9.2.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매우 중요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경직적으로 거치면서 사업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 변수로 인해 사업추진 과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사업지원에 관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 - 더욱이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사업성도 악화되어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이 어려움이 있기에 공공의 지원강화 요구되기에 특례법 제정 필요 - (제안방향) 특례법 제정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공공의 분쟁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복잡한 주요 절차를 유연하게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 면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법률명	주요 내용
	<p>합동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견을 조정하는 등 인·허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7조)</p> <p>나. 조합의 업무에 대해 전문가나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의 총괄관리 업무 등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시공자 선정, 사업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p> <p>다.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개최하려는 자는 기초지자체 등에게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기초지자체 등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조합 운영의 정상화를 지원하도록 규정(안 제9조)</p> <p>라. 기초지자체 등이 직접 정비사업 지원 기구에게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 사항을 심사·조정할 수 있게 하며, 기초지자체가 공사비 분쟁 조정단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안 제10조 및 제11조)</p> <p>마. 국토교통부와 광역지자체에 정비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상담 및 지원, 합동조정회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12조)</p> <p>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제15조)</p> <p>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기초지자체 등에게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5조)</p> <p>아.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용적률보다 완화하여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지 내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제19조)</p> <p>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p> <p>차.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회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 및 제22조)</p> <p>카. 정비사업의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3조 및 제24조)</p> <p>타.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안 제25조)</p>
<p>「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535호(윤한홍 의원 등 10인)] ('24.9.2. 법률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특약 설정 시 원도급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이 가능하나 계약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은 여전히 유효해 부당특약 이행 의무가 잔존하고, 원도급자를 상대로 별도의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하도급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등 하도급자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기에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특약 설정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거래 안정성 확보와 하도급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도모를 위해) 부당특약 무효 규정 현행법 마련 필요 - (제안방향)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규정(안 제3조의4제3항 신설)

법률명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603호(강득구 의원 등 10인)] (“24.9.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주에게 유해·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무 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 반복 - (제안이유②) 근로자의 성별 및 신체 특성에 따라 착용할 수 있는 보호구 크기 등이 다름에도 현행 시행규칙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체구가 작은 근로자 등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근로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안 제40조의2 신설)
「건설기술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613호(안태준 의원 등 10인)] (“24.9.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①) 광역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 현장 점검 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기여 - (제안이유②)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 규정을 통해 중층 관리·감독 체계 구축 - (제안방향①) 광역지자체에 건설공사 부실측정 권한 부여(안 제53조) - (제안방향②) 광역지자체에 현장점검 권한 부여(안 제54조) - (제안방향③)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점검 대행 권한 부여(안 제54조의2) - (제안방향④) 광역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에 사고조사 권한 부여 및 조사가능 대상을 중대건설현장사고에서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안 제67조)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633호(이용우 의원 등 22인)] (“24.9.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대상에 폭염·한파 등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있어 기상 여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노동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권고 수준에 그쳐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기상여건 및 고열·한랭·다습한 상태 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작업 중지권의 사용 요건에 기상여건 등을 추가하며, 현재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의 대상에 기상여건 등에 장시간 노출되는 근로자를 추가하고, 사업주가 냉난방장치 설치 등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현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조치 및 작업중지를 직접 명할 수 있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통해 예방해야 하는 건강장해의 종류에 폭염·한파·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한랭·다습한 상태(이하 “기상여건 등”)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9조제3항 신설) 다. 사업주가 냉난방장치 설치 등 기상여건 등에 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곧바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거나(안 제52조의2제1항), 또는 사업주에게 먼저 각종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도 작업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안 제53조의2) 라.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대피 조치 요건에 기상여건 등에 의한 사망·부상 또는 질병의 위험

법률명	주요 내용
	<p>을 추가(안 제51조)</p> <p>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 요건에 기상여건 등으로 인한 사망·부상 또는 질병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험의 존부가 불확실한 때에는 근로자가 판단하도록 규정(안 제52조제1항 전단)</p> <p>바.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때에 사업장의 노동조합 및 법 제23조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그 작업중지·대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2조제1항 후단)</p> <p>사. 작업중지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3조의3)</p> <p>아.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기상여건 등에 노출되어 응급처리를 필요로 하는 타 근로자를 발견하면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받은 사업주가 119구급대 등 소방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제53조의4 및 제175조제2항제1호의2 신설)</p> <p>자.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유해·위험작업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경우 폭염·고열을 비롯한 기상여건 등에서 장시간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29조제3항)</p> <p>차.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에 작업중지·대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15조제1항)</p> <p>카.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작업중지·대피의 기준 및 절차 포함 및 규정 작성 시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그 내용을 반드시 협의하도록 규정(안 제25조제1항)</p>
<p>「소규모 주택 정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640호(김희정 의원 등 11인)] (24.9.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방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 간소화 및 임대주택 공급가격 상향,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현행 제도 개선·보완을 통해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 유도 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5명 초과 시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 전원에서 80% 이상으로 완화(안 제22조제2항)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안 제23조제1항 및 제4항) 다.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육·교통·재해 심의 등을 포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라. 관리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 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3조의5제3항 및 제4항) 마. 광역지자체장이 기초지자체 등에게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제3항) 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초과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9조의2제4항 및 제5항) 사.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9조의2제7항 및 제8항) 아. 사업시행자가 기초지자체 등에게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부지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9조의3 신설)

법률명	주요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641호(황희 의원 등 10인)] ('24.9.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경우 높은 토지비용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일부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용적률·건폐율 등의 규제로 인하여 적은 면적과 낮은 층수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시설의 활용도나 효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공공체육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활용을 위한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적용하도록 개정(안 제2조제4호, 제40조의7 신설)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642호(권영세 의원 등 10인)] ('24.9.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①) 건축공사 공사감리자에게 시공자의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에게 알린 후 시공자에게 건축공사 시정·재시공·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재시공·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할 때에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가권자의 경우 공사감리자의 보고 전에는 건축현장 부실 발생 사항을 알 수 없어 현장 점검, 공사 중지, 허가 취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초기단계 대응이 곤란하기에 개선 필요 - (제안이유②) 현행법에선 공사시공자에게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해진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저하되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①) 건축물공사 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 외에도 허가권자에게도 함께 알린 후 시공자에게 건축공사 시정·재시공·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25조제3항, 제113조제2항제1호) - (제안방향②)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정해진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24조제7항, 제113조제1항제6호)
「산업안전 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647호(정혜경 의원 등 11인)] ('24.9.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소음·진동이나 환기·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 중이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설·한파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황사·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조치나 작업중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보건조치의 대상에 폭염·한파 등 기상여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기상 특보가 발령되거나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도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51조)
「조세특례 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658호(김위상 의원 등 11인)] ('24.9.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자산으로서 안전시설을 포함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 비용의 10%를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이 투자 비용 중에는 안전·보건 업무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되었지만 이에 해당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자금 사정으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의무를 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개선 필요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방향)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시설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25조의8 신설)
<p>「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667호(김정호 의원 등 12인)] ('24.9.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고, 사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수탁·위탁거래의 분쟁 조정에 한계가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현행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별도 사전 절차가 필요 없으며, 판사·검사 경력 또는 변호사·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등 수탁·위탁거래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 보다 전문성·공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 있기에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8조의 5제1항 후단 신설)
<p>「산업안전보건법」 - 연계법률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679호(이학영 의원 등 12인)] ('24.9.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재해 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협소함을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 발주청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어 현행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하기에 개정 필요 - (제안방향) 안전·보건조치 등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그 위반·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59조) * 이 법률안은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03680호),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03683호)의 의결을 전제
<p>「국가계약법」 - 연계법률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680호(이학영 의원 등 12인)] ('24.9.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하나로 계약을 이행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 중이나, '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개정 필요 - (제안방향)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개정(안 제27조제1항제8호) * 이 법률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03679호)의 의결을 전제

법률명	주요 내용
「지방계약법」 - 연계법률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683호(이학영 의원 등 12인)] ('24.9.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03680호(이학영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와 동일 - (제안방향)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개정(안 제31조제1항제9호 신설) * 이 법률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03679호)의 의결을 전제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747호(이학영 의원 등 10인)] ('24.9.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규모별로 피난 출구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등 화재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발생한 도시침수와 홍수로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상가 등의 침수 피해로 인해 폭우 등 기상재난에 대비하여 도심 내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건축주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개정(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798호(이강일 의원 등 12인)] ('24.9.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①) '23년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 중이나, 현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자재값으로 보기 어려운 경비 중 전기·가스 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하도급대금 중 에너지비용과 운송료의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해당 비용이 급증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보호를 받지 못해 하도급자의 어려움을 구제하지 못하기에 개정 필요 - (제안이유②) 현행법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인 부당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하도급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어렵기에 부당특약 무효 규정 도입 필요 - (제안방향①)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재료비뿐만 아니라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 등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주요 재료비' 등으로 개정 - (제안방향②) 부당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개정(안 제2조제16항·제17항 및 제3조제2항3호, 제3조의4제3항 신설 등)
「소음·진동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891호(이학영 의원 등 10인)] ('24.9.1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해외 연구에 따르면, '13~'17년까지 해당 국가 토착 조류의 약 30% 이상 건물에 부딪혀 죽었다고 보고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생태원 조사에서 연간 약 780여만 마리의 조류가 인공구조물 충돌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 중 - 최근 조류 충돌 저감 대책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공공기관 소관 인공구조물에 한하여 야생동물 충돌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설치·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충분한 야생동물 보호에 한계가 있기에 개정 필요 - (제안방향) 현행법에 방음시설 설계·시공단계에서 야생동물 피해 저감조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등에 한정하지 않고 방음시설에 한해서는 설치 범위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도록 개정(안 제40조제1항 등)

법률명	주요 내용
<p>「부동산 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919호(권영진·손명수 의원 등 16인)] (‘24.9.11.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현재 사업자가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건설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 - 허나 국내 부동산 PF는 낮은 자기자본비율과 시공사의 책임준공 등 제3자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로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 대출을 유발하고, 부동산 경기와 금리 등락 등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하여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 - 더욱이 국내 부동산 PF 규모의 대규모성을 고려할 때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치 않으면 금융과 실물경제 모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국내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된 재무 자료와 사업성 등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이해당사자 간 갈등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구의 부존재 등으로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 및 대응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기에 법률 제정 필요 - (제안방향) 부동산 PF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법률 제정을 통해 마련함으로써 효율적 부동산 개발사업의 관리 및 국민경제 안정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정보의 취합(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나.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운영(안 제10조) 다.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1조~제21조)
<p>「소음·진동 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3976호(김태선 의원 등 17인)] (‘24.9.1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자,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중이나, 현재 토요일은 강화된 소음·진동 규제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 토요일 역시 공휴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 소음을 관리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 소음과 진동의 제한 기준 명시, 주거지역이나 자연보호구역 등의 경우 상업 지구 및 여타 지역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공휴일의 경우 일정 지역에 대해 기준보다 5dB(A) 더 강화된 소음 기준 적용 - (제안방향)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평일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안 제21조제2항)
<p>「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029호(김태년 의원 등 11인)] (‘24.9.1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령에서는 층수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모든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의 경우 현행법령 기준 강화 이전 건축된 건축물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컸기에 기준 강화 이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제안방향)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화재 발생 시 그 피해가 큰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2조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9항 신설 등)
<p>「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032호(김동아 의원 등 11인)] (‘24.9.1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부당하게 저가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이유로 손해를 입힌 경우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도급자가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 고질적으로 부당 하도급에 대해 실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매우 적으며(‘16~’20.10.까지 2건 판결) 적용되는 손해배상액이 평균 1.5배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에 개선 필요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방향)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도급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040호(김동아 의원 등 11인)] ('24.9.1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을 통해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기술 탈취가 발생하더라도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보다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에 손해배상 범위 또한 상한선만 명시되어 있어 손해배상 범위가 억제력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제40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5배로 고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을 억제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 유도
「건설근로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105호(정혜경 의원 등 10인)] ('24.9.2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 하여금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년도까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행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주휴일과 단체협약의 공휴일 등은 사업주가 신고하는 퇴직공제 신고 근로일수에 당연히 포함되어 왔으나, 이후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휴일 등의 근로일수 포함 여부를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르도록 하여, 개별 약정 내용에 따라 유급휴일의 근로일수 포함 여부가 달라졌기에 개정 필요 - (제안방향)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퇴직공제 신고 시 유급휴일 등을 모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로 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연구원 소식

유형	제목	주요 내용																																							
세미나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위한 ESG 정착방향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위한 ESG 정착방향 세미나"를 10월 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2025년 3월, 개원 30주년을 맞아 건설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 '스마트 건설', '주택/도시', '산업현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시리즈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그 첫 번째로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신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ESG 경영'을 주제로 함.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세미나 개요</p> <p>2024. 10. 8(화) 14:00 ~ 17:30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p> <p>프로그램</p> <table border="1"> <thead> <tr> <th>시간</th> <th>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4:00-14:10</td> <td>개회사</td> <td>이 총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td> </tr> <tr> <td>축사</td> <td>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주제발표</td> </tr> <tr> <td rowspan="2">14:10-15:10</td> <td>[제1주제] 건설산업의 ESG경영 가치(value)와 정착 방향</td> <td>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제2주제] 건설산업의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한 영역별 전략과제와 대응방향</td> <td>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td> </tr> <tr> <td>15:10-15:20</td> <td>Coffee Break</td> <td></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종합토론</td> </tr> <tr> <td rowspan="7">15:20-17:00</td> <td>○ 좌 장 :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td> <td></td> </tr> <tr> <td>○ 토론자</td> <td>- 김성갑 LH공사 ESG 차장</td> </tr> <tr> <td>(기타다수)</td> <td>- 박환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td> <td>- 송두삼 성균관대학교 교수</td> </tr> <tr> <td></td> <td>- 송재경 포스코이앤씨 ESG팀 팀장</td> </tr> <tr> <td></td> <td>- 양재선 법무법인 율촌 미국 변호사</td> </tr> <tr> <td></td> <td>-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부사장(변호사)</td> </tr> <tr> <td></td> <td>- 정석한 대한경제신문 차장</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상기 토론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small>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small> 한국건설산업연구원 </p> </div>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	개회사	이 총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축사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주제발표			14:10-15:10	[제1주제] 건설산업의 ESG경영 가치(value)와 정착 방향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제2주제] 건설산업의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한 영역별 전략과제와 대응방향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10-15:20	Coffee Break		종합토론			15:20-17:00	○ 좌 장 :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토론자	- 김성갑 LH공사 ESG 차장	(기타다수)	- 박환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송두삼 성균관대학교 교수		- 송재경 포스코이앤씨 ESG팀 팀장		- 양재선 법무법인 율촌 미국 변호사		-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부사장(변호사)		- 정석한 대한경제신문 차장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	개회사	이 총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축사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주제발표																																									
14:10-15:10	[제1주제] 건설산업의 ESG경영 가치(value)와 정착 방향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제2주제] 건설산업의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한 영역별 전략과제와 대응방향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10-15:20	Coffee Break																																								
종합토론																																									
15:20-17:00	○ 좌 장 :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토론자	- 김성갑 LH공사 ESG 차장																																							
	(기타다수)	- 박환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송두삼 성균관대학교 교수																																							
		- 송재경 포스코이앤씨 ESG팀 팀장																																							
		- 양재선 법무법인 율촌 미국 변호사																																							
		-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부사장(변호사)																																							
	- 정석한 대한경제신문 차장																																								
연구 보고서	건설산업의 ESG 경영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7일 「건설산업의 ESG 경영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는 ESG 경영이 국내외적으로 건설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함. 연구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ESG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기업들이 환경·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 및 성과지표를 제시함. 건설산업의 ESG 성과지표는 환경분야 6개 대분류에 성과지표 21개, 사회 분야 7개 대분류에 성과지표 30개 그리고 거버넌스 분야 4개 대분류에 성과지표 21개 등 대분류 17개, 성과지표 72개로 구성됨. 특히, 성과지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사항, 경영활동 그리고 법규사항 등 각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 명시함으로써 해당 성과지표의 활용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